

##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

주 관 팀	주식운용팀, 채권운용팀
제정일자	2008년 8월 18일
개정일자	2009년 2월 2일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GS 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제 2 조(적용범위 및 대상자산)** ① 이 기준은 투자신탁재산을 각 투자신탁에 배분할 경우에 적용하며, 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0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단기대출,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CD,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Swap 등으로 한다. <개정 2009.1.29>

② 회사는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를 말한다)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9>

**제 3 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재산별로 미

##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

---

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9>

2. “운용담당자”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4. “매매주문서”라 함은 투자대상자산의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9.1.29>

## 제 2 장 자산배분

**제 5 조(자산배분원칙)** ①운용담당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투자신탁별 사전자산배분을 함에 있어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사는 법 제 80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처분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 6 조(자산배분절차)** <개정 2009.1.29> ①투자신탁별로 취득 또는 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매매이전에 배분하고 제 10 조의 매매주문서를 작성하여 매매담당자에게 전달한다.

②투자신탁별로 취득 또는 처분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것은 다수의 투자신탁에 대하여 동일계좌를 사용하여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결과를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처분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처분한 자산의 수량이 취득·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④동일한 종목에 대한 투자신탁별 배분은 동일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주문접수순으로 한다.

⑤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규 등(집합투자규약, 운용계획서 포함)의 위반 및 위반 방지를 위한 체결

##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

---

수량 정정 또는 투자신탁정정

2.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체결수량정정 또는 투자신탁정정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제 7 조(수요예측 및 입찰을 통한 배분)** ①공모주 등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을 선별한 후, 당해 투자신탁에 한해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안분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9>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수요예측을 통한 운용이 50% 이상임을 명기한 경우에는 해당투자신탁에 배분신청수량을 우선적으로 안분배분한다. <개정 2009.1.29>  
③입찰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입찰일 당일 해당 투자신탁에 배분한다.

**제 8 조(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 제 3 장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 9 조(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장부 및 서류)** <개정 2009.1.29> ①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매매주문서와 배분명세를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매매주문 또는 배분명세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명세서는 전산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동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자산배분명세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 6 조제 5 항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집행

**제 10 조(매매주문서의 작성)** ①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종목명,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배분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

---

전산주문시스템의 작동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9>

②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채권종류별 및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③매매주문서상의 주문가격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및 시장가격 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지정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지정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시 투자신탁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 및 주문수량만을 작성하고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매매주문의 집행)**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자산배분 및 자산배분명세서 작성

**제 12 조(자산배분명세서의 작성)** ①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자산배분명세서에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전산상으로 각 체결단가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배분할 경우에 체결가격과 배분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9>

③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 6 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 등

**제 13 조(겸직금지)**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등 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다음

##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9>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 <신설 2009.1.29>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 지는 매매거래
3. 프로그램매매
4. 장내파생상품 거래.

제 14 조(기준의 변경)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9.1.29>

제 15 조(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9>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